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11월 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1(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1. 1(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담당과장	김호성 과장(044-203-5140) 김유진 과장(044-201-3768)	담 당 자	황채은 사무관(044-203-5149) 오한영 서기관(044-201-4094)

에너지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개 신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 이하 'ZEB')**을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ZEB의 확산을 위해 **'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 ZEB 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액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요 우수사례**(1등급) >

화성시 동탄7동도서관(왕배푸른숲도서관)	성남시 LG ThinQ Home
	

□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 공공부문 의무화(1,000m² 이상 신축)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 ('17년) 10건 → ('18년) 30건 → ('19년) 41건 → ('20년) 507건 → ('21년) 1천여건 예상

○ 향후에는 **'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m² 이상 신축), **'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m² 이상 신축)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하여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 또한, **ZEB 인증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비교 >

구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목적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우수한 에너지절감 기술·기자재를 적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이 적은 고효율 건축물 확산
인증기준	❶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❷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❸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합계에 따라 등급 분류
등급 구분	5개 등급 (1등급~5등급)	10개 등급 (1⁺⁺⁺등급~7등급)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 (변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8개 기관을 동일하게 지정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 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ZEB 인증기관을 상호 연관성이 높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 지정토록 개정

○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금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제로에너지건축물 신규 지정 인증기관
2.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황채은 사무관(☎ 044-203-51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로에너지건축물 신규 지정 인증 기관

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1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2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 기술원	조정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7층, 8층
3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김병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4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 환경연구원	맹준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6길 5, 7층
5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주식회사	정의식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회관 12층
7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김종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8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 연구원	이경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 907호

참고2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개요

□ (정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ZEB) 개념도 >



□ (인센티브)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건축주 부담 완화 추진**

-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완화(15%~11%)
-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1~3등급 20%, 4등급 18%, 5등급 15%)
- 자금 및 금융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BEMS 보조금 지원 등
- 기타(산업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설비 투자비 저리 지원 등

□ (인증건수) '21.9월까지 **1,380건 인증완료**(운영 및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9월	계
예비인증	10	26	35	493	750	1,291
본인증	-	4	6	14	42	63
합 계	**10**	**30**	**41**	**507**	**792**	**1,380**

□ (인증등급)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 조건
1등급	100% 이상인 건축물	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최고1⁺⁺⁺~ 최저7등급) 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전자식검침기 설치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ZEB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홈페이지(www.zeb.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